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2
------	-----

2022. 9. 2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9.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배현숙)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립대학교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교직원 및 대학(원)생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업무·학업 몰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임

나. 2023년 2월 28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

나.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 시설규모 : 지상 2층(연면적 520.12㎡)
- 시설용도 :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 준공일자 : ' 17. 12. 15.
- 개관일자 : ' 18. 3. 1.



다. 운영개요

- 정·현원 : 정원 65명, 현원 37명(' 22. 7월 기준)
 - ※ 반별 정원은 보육수요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예정
- 교 직 원 : 총 16명(원장, 보육교사 8, 보조교사 3, 조리원 2,

미화원 1, 사무원 1)

- 입소대상 : 서울시립대 소속 교직원 및 대학(원)생의 자녀(만 8개월 이상 ~ 취학 전 아동)

라.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23. 3. 1. ~ ' 26. 2. 28.)
- 위탁업무
 -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예산 계획 및 집행
 -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 영유아 보호 및 교육
- ' 23년 위탁예산 : 506,160천원(전액 인건비)
 - ※ 어린이집 총 예산 : 803,088천원(지자체보조금 등 296,928천원 포함)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마.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 1차 : ' 18.1.8. ~ ' 21.1.7.(한솔어린이보육재단, 신규위탁)
 - * 2차 : ' 21.1.8. ~ ' 23.2.28.(한솔어린이보육재단, 재계약)

바. 민간위탁 지속(재위탁) 필요성

-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22.4.19.)

- ' 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22.5.12.) : '적정' 의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이하 ‘시립대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23.2.28.)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나. 시립대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 유능하고 창의적인 우수한 여성인력이 결혼과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필요하며, 특히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제21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제14조).

- 시립대 어린이집은 교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3월 개소되었으며 위탁운영을 맡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신규 위탁과 재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교직원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소속 교직원 및 대학(원)생의 자녀를 대상으로 정원 65명 중 현원 37명(만 8개월 이상 ~ 취학 전 아동)이 입소하여 교육 중임.

< 시립대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 >

(단위 : 명)

구 분	출생일 기준 (2022.7.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20.1.1. 이후 출생	'19.1.1~ 12.31	'18.1.1~ 12.31	'17.1.1~ 12.31	'15.1.1~ '16.12.31
교실수	5	1	1	1	1	1
학급수	8	2	2	2	1	1
정 원	65	6	10	14	15	20
현 원	37	3	10	14	10	-
교사수	7	1	2	2	2	-
기 타	원장 1, 보육교사 7, 보조교사 3, 조리사 2, 미화원 1, 사무원 1					

- 내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 8억 3백만원 중 서울시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5억 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다.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 시립대 어린이집은 교내 구성원의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보육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인력,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관기관이 수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립대 어린이집은 지난 5월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통보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기관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아 민간위탁운영의 적정성이 인정됨.
-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평가체계인 ‘평가인증제’로 평가하고 있어 성과보고서를 평가인증 결과서(인증 유효기간 2019.8.15.~2023.8.14.)로 대체하고 있음.
- 다만, 개소 이후 매년 정원대비 현원이 과부족 상태이고 특히 만 4세 이상부터는 유치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작년 부터 현원이 없음.

< 연도별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정 원	65	6	10	14	15	20
2018년	32	6	10	7	3	6

2019년	41	6	10	12	7	6
2020년	38	5	10	9	8	6
2021년	32	6	10	12	4	-
2022년	37	3	10	14	10	-

* 매년 12월 기준, 2022년은 6월 기준

- 반면에 신청자가 많은 만0세반과 만1세반의 경우에는 정원이 초과되어 신청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급별 정원 조정과 인근지역 내 원생 모집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2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립대학교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교직원 및 대학(원)생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업무·학업 몰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임
- 나. 2023년 2월 28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
- 나.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 시설규모 : 지상 2층(연면적 520.12㎡)
 - 시설용도 :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 준공일자 : '17. 12. 15.
 - 개관일자 : '18. 3. 1.



다. 운영개요

- 정·현원 : 정원 65명, 현원 37명('22. 7월 기준)
 - ※ 반별 정원은 보육수요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예정
- 교 직 원 : 총 16명
 - 원장, 보육교사 8, 보조교사 3, 조리원 2, 미화원 1, 사무원 1
- 입소대상 : 서울시립대 소속 교직원 및 대학(원)생의 자녀
 - 만 8개월 이상 ~ 취학 전 아동

라.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3. 3. 1. ~ '26. 2. 28.)
- 위탁업무
 -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예산 계획 및 집행
 -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 영유아 보호 및 교육
- '23년 위탁예산 : 506,160천원(전액 인건비)
 - ※ 어린이집 총 예산 : 803,088천원(지자체보조금 등 296,928천원 포함)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마.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8.1.8. ~ '21.1.7.(한솔어린이보육재단, 신규위탁)
- 2차 : '21.1.8. ~ '23.2.28.(한솔어린이보육재단, 재계약)

바. 민간위탁 지속(재위탁) 필요성

-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 운영 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22.4.19.)

○ '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2.5.12.) : '적정' 의결

※ 작성자 :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사팀 박혜원 (☎ 6490-6421)